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0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6.
3. 회부연월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권 보장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항목으로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6조, 제9조, 제9조의2-----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 -----특별교부세·사회복지교부세----- -----.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생략)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현행	개정안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신설> 4. 5. (생략)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신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u>부동산</u>	<u>사회복지교부세</u>----- 2.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u>사회복지교부세</u>----- 3. 사회복지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3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4.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 ① 사회복지교부세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u>사회복지</u>

현 행	개 정 안
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지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범위나 수준이 달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권 보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충분히 복지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사회복지비(표준행정수요액, 보정수요)¹⁾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별표2] 기초생활보장비, 노인·아동·장애인복지비, 보건 사회복지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별표4] 사회복지수요(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노령·아동·장애인비율, 노인요양시설 등)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하지 않고, 기존 재원 내에서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할 경우 지방정부 간 재원 확보를 위한 갈등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한편,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내국세 및 내국세 정산액(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각각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사회복지교부세에 반영하는 비율에 오류가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서 사회복지교부세를 중복하여 차감²⁾하여 3가지 교부세 항목의 합계가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보통교부세	(내국세+내국세 정산액) *97/100 - <u>사회복지교부세</u> (내국세+내국세 정산액)*94/1,000,000	(내국세+내국세 정산액) *97/100 - <u>사회복지교부세의 2분의 1</u> (내국세+내국세 정산액)*47/1,000,000
특별교부세	(내국세+내국세 정산액) *3/100 - <u>사회복지교부세</u> (내국세+내국세 정산액)*94/1,000,000	(내국세+내국세 정산액) *3/100 - <u>사회복지교부세의 2분의 1</u> (내국세+내국세 정산액)*47/1,000,000
사회복지교부세	(내국세+내국세 정산액)*94/1,000,000	(내국세+내국세 정산액)*94/1,000,000
합 계	(내국세+내국세 정산액)*999,906/1,000,000	(내국세+내국세 정산액)*1,000,000/1,000,000

2)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서 각각 사회복지교부세의 2분의 1씩만 차감해야 함

또한, 개정안 제4조제2항제3호의 “해당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문구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제1항제1호의 금액”과 동일하고, “제5조 제3항제1호3)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의 문구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제1항제4호의 정산액4)”과 동일하므로, 법 문언의 통일성 측면에서 각각 “제1항제1호의 금액”, “제1항제4호의 정산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비 수요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 특정교부세를 신설할 경우 지방재정의 칸막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및 복지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자치구에 재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

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4)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